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윤영희 의원 발의]

의안번호	2659
------	------

발의일자 : 2025. 1. 23.

발 의 자 : 윤영희 의원

찬 성 자 : 정재동 의원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정보 및 의원의 의정 활동 등을 구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구민과 소통함으로써 의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나. 홍보활동의 원칙, 방법 및 홍보내용(안 제3조 ~ 제5조).
- 다. 누리집, 사회관계망 서비스 설치 및 운영(안 제6조 ~ 제7조).
- 라. 홍보영상 등 제작(안 제8조).
- 마. 홍보매체의 제작·운영 등의 위탁(안 제9조).
- 바. 자료관리(안 제10조).
- 사. 공모·참여행사 등(안 제11조).
- 아. 개인정보 보호(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15조, 제29조, 「공직선거법」 제9조,
「저작권법」 제4조,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4조, 제5조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다. 기 타

- 1) 현행 조례 : 해당 없음
- 2)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 3) 입법예고 : 2025. 2. 4. ~ 2. 10.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 의정 정보를 구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구민과 소통함으로써 의정 활동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홍보매체”란 의정 정보를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과 그 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물체 또는 수단으로 홍보간행물·누리집·사회 관계망 서비스 등을 말한다.
2. “사회관계망 서비스”란 인터넷 이용자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공유하여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온라인의 양방향성 인터넷 매체를 말한다.
3. “참여 행사”란 구민의 의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의 공유와 확산 효과를 높이기 위한 행사를 말한다.
4. “홍보물”이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자·부호·음성·음향·사진·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제3조(홍보활동의 원칙)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정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의 원칙에 따라 홍보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한다.

② 의장은 의정 개방 및 참여, 소통을 위하여 누리집, 사회관계망 서비스, 영상, 홍보간행물 등을 활용한 홍보에 국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국민의 알 권리 증진을 적극적으로 도모한다.

③ 의장은 사회통합, 양성평등 등 국민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홍보방법) 의장은 의정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다.

1. 누리집 설치 및 운영
2. 사회관계망 서비스 운영
3. 홍보영상 제작 및 배포
4. 홍보간행물 제작 및 배포
5. 의정 홍보를 위한 참여 행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념품 등 홍보물 제작 및 배포

제5조(홍보내용) 의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홍보매체에 게재할 수 있다.

1. 의정활동과 관련한 구민소통 강화 및 구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경제, 문화, 안전, 관광, 교통, 환경, 교육 및 생활정보 등 구민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3. 의정·구정 소식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민에게 유익한 정보 또는 의정 홍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누리집 설치 및 운영) ① 의장은 의회 누리집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이하 “누리집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한다.

② 의장은 누리집 시스템이 24시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보 보안 및 유지보수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효과적인 의정 홍보를 위하여 누리집을 외국어로 번역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사회관계망 서비스 운영) 의장은 구민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수시로 의정 홍보물을 제작·편집하여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게시할 수 있다.

제8조(홍보영상 등 제작) 의장은 의회 주요 의정활동과 정책 등 홍보 영상은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제작·편집하여 송출 및 게시할 수 있다.

제9조(홍보매체의 발행·제작·운영 등의 위탁) 의장은 홍보매체의 효율적인 발행·제작·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취재·촬영·편집·디자인·개발·유지보수·인쇄·배부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자료관리) ① 의장은 홍보매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홍보매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누리집,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 홍보매체에 등록된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게시물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국가 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 법령에 어긋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보호 등에 어긋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 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의 비방 및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상업성 광고 등 영리적 목적이 있거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성차별적 표현 등으로 양성평등 문화를 저해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9. 사회관계망 서비스 계정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게시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
10.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상습·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 등

③ 홍보매체에 게시되는 홍보물은 「저작권법」, 「공직선거법」,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공모·참여행사 등) ① 의장은 구민의 의정 참여, 구민 상호 간 소통, 지역공동체 및 의정 홍보 강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누리집,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을 통해 공모 또는 참여 행사 등을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의정 사업 등에 관해 여론 수렴 및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토론회 및 연구 발표, 기념식 등 의회가 주최하거나 운영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
3. 의정 홍보 효율성 향상 및 구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경우

4. 그 밖에 의정을 홍보하는 데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경우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구민 참여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 또는 선정된 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의 종류와 제공 절차 및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홍보매체를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제12조(개인정보 보호) 의정 홍보와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의 관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개설·운영된 누리집,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관계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2024. 3. 15.] [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4.>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 달성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4.>

⑧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4.>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7.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 공직선거법

[시행 2025. 1. 7.] [법률 제20660호, 2025. 1. 7., 일부개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①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검사(군검사를 포함한다) 또는 경찰공무원(검찰수사관 및 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은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속·공정하게 단속·수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2. 21., 2016. 1. 6., 2020. 12. 22.>

□ 저작권법

[시행 2024. 8. 28.] [법률 제20358호, 2024. 2. 27., 일부개정]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① 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시행 2020. 12. 28.]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51호, 2020. 12. 28., 일부개정.]

제4조(품위등) 방송광고는 방송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4. 12. 24.>

1. 인간의 존엄성 및 생명을 경시하는 표현
2. 폭력, 범죄, 반사회적 행동을 조장하는 표현
3. 지나친 공포감이나 혐오감을 조성하는 표현

4. 과도한 신체의 노출이나 음란·선정적인 표현
5. 삭 제 <2019. 9. 23.>
6. 삭 제 <2014. 12. 24.>
7. 특정 성을 비하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표현
8. 신체 또는 사물 등을 활용한 욕설 등의 표현
9.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성기·음모 등 신체의 부적절한 노출, 생리작용, 음식물의 사용·섭취 또는 동물사체의 과도한 노출 등의 표현
10. 그 밖에 불쾌감·혐오감 등을 유발하여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표현

제5조(공정성) ① 방송광고는 기업간의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고 국민의 소비생활에 편익을 주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방송광고는 소송등 재판에 계류중인 사건 또는 국가기관에 의한 분쟁의 조정이 진행중인 사건에 대한 일방적 주장이나 설명을 다루어서는 아니된다.